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5 선고 2024가단140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서범준

별지1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138.1 m²
2. 경기도 남양주시 대 31287. 8 m²
3. 경기도 남양주시 대 505. 2 m²
4.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161. 9 m²
5.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294. 2 m²
6.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 80. 4 m²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면적 : 84.9305 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2.3.4.5.6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6145.6분의 45.964

별지2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임대료 1,350,000원, 임대기간을 ~~2022년~~
04월 29일부터 2년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22년 12월분(납부일 12월 29일), 2023년 6월분 (6월 29일
납부일), 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3개월분을 지급 (2023년 7월 1일) 하고,
9월분부터 현재까지 4개월분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원고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 만기 후 입주할 것이라는 통보를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통보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을 독촉하고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화를 피하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해주지 않아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최고한 바 있습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저희가 들어간다고 통보했지만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반응이
없고,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임대인은 세를 내놓은 상태여서
증간에 저희가족이 오도가도못하는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